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국립종자원 예규 제206호)

제정	1995.	2.	10.
개정	1995.	4.	14.
개정	1998.	3.	31.
개정	1998.	11.	27.
개정	2001.	2.	10.
개정	2002.	6.	24.
개정	2003.	6.	25.
개정	2004.	7.	15.
개정	2006.	7.	25.
개정	2007.	11.	30.
개정	2009.	3.	19.
개정	2010.	8.	16.
개정	2012.	10.	12.
개정	2014.	10.	30.
개정	2017.	1.	3.
개정	2018.	2.	2.
개정	2018.	9.	11.
개정	2021.	9.	1.
개정	2022.	10.	11.
개정	2025.	10.	23.
개정	2026.	10.	15.

제1장 채종포장 선정 및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종포장 및 농가 선정) ① 채종포장은 「종자산업법」 제29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배 적합지역에 선정한다.

1. 국립종자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주요작물 종자 생산·공급계획」에 따라 작물별로 전년도 채종단지 종합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자체 생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채종단지 적정 규모는 벼 30ha 범위, 보리·콩 등 밭작물 20ha 범위에서 집단화하되, 지역별 채종여건(품종특성, 포장조건, 주민호응도, 사업비 등)에 따라 국립종자원 지원장이 채종단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3. 채종단지는 1개 단지 1개 품종 종자생산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종자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장이 품종 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지자체 및 농협 등에서 주관하여 채종단지를 지도·관리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채종단지 자체적으로 채종포장의 관리·운영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급종 생산량 변화 등으로 신규 채종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별표 3의 신규 채종단지 선정지표를 참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채종농가는 「종자산업법」 제2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의 자격을 갖춘 농업경영체로서 종자생산의 중요성을 인식, 종자생산에 적극 호응하고 채종지도에 협조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농가 교육은 채종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채종단지에서 해당 지원에 교육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종자생산대행 계약 절차) ① 보급종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지원장에게 「종자관리요강」 제10조제1항에 따른 종자생산대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채종단지 회원 연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자생산대행신청을 받은 지원장은 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답사를 거쳐 채종포장 및 농가선정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종자관리요강」 제10조제2항에 따라 종자생산대행확인서를 농가 또는 단지별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채종포장으로 선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생략하는 등 선정요건 확인절차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종자생산대행확인서를 단지별로 교부할 경우 채종단지 대표로 하여금 농가별로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종자생산대행계약 이후 농가, 필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구비서류, 현지확인 등) 후 종자생산대행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지원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채종단지와 파종에서 수매 시까지 종자생산에 대한 영농 매뉴얼을 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⑤ 채종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종단지선정심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지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검사과장, 생산·검사·정선팀장과 채종단지 대표,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하며 총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⑥ 지원장은 채종단지 지정을 해제하거나, 신규지정 조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⑦ 지원장은 종자생산을 위한 채종적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예비단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단지 선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종자 (원종) 인수 및 배부) ① 보급종 생산에 사용할 원원종 및 원종(이하 "원종"이라 한다)의 인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원종인수 대상종자는 원종생산 기관장이 국비를 지원 받아 생산한 원종 전량(종자검사 불합격포함)으로 한다.
2. 원종의 인수 시기와 방법은 해당 지원장이 보관창고 여석 및 정선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원종생산 기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타 기관으로부터 원종인수 및 지원간 원종의 인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인수 지원에서 반드시 인수 즉시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결과와 품종 및 수량을 확인하고, 발아율 및 순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확인 및 조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선, 선별, 저장관리 및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종의 수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원종 수송은 수요기관에서 원종 보관창고로부터 해당지원 정선저장고까지 수송하되 지원의 필요에 따라 착지를 채종단지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원종 수송의 하역조건은 국립종자원장과 농협경제지주간에 체결한 「종자 구·판매업무 대행 및 보관수송조작 도급계약서」의 종자 인수도 계약 규정을 따른다.

나. 지원장은 원종 수송 완료 후 농협경제지주에서 청구하는 수송조작비, 하역비 등이 정확히 청구되었는지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종자수송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지원장은 수송 과정에서 종자가 섞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송거리가 원거리이거나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수송비 절감 등을 위해 인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수송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원종의 정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원종 정선대상 품종·물량 등에 대해서는 지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원종 생산량이 충분한 품종은 정선·소독하여 채종농가에게 배부하되 소량·품위저하 우려 등 소독이 어려운 경우 소독약제를 함께 배부하고, 교육을 통해 철저히 소독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원종을 정선할 때에는 생산 담당자가 입회하여 혼종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원종정선·소독일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원종의 배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인수한 원종을 채종농가에 배부할 때에는 생산 담당자 또는 해당 단지의 생산관리지도원이 입회하여 혼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배부하여야 한다. 또한 원종의 생산지가 다를 경우 산지별로 구분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2. 아울러 별지 제4호서식의 "보급종 생산용 원종배부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 보급종 생산용으로 채종농가에 배부하고 남은 원종은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국립종자원 예규)」에 따라 보급종으로 처리한다.

제5조(채종포장 관리 및 평가) ① 채종포장은 생산관리지도원 책임하에 관리하고, 채종포장의 생산지도는 「주요작물종자 생산·공급계획」의 작물별 세부추진요령과 지원장이 정한 영농매뉴얼에 따라 순도·발아세 및 발아율이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채종단지회원 자율적으로 채종단지 운영 및 관리가 어려운 단지는 지원장이 별도의 채종단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원장은 안정적인 보급종 생산을 위하여 종자소독, 육묘, 이앙(파종), 출수기 및 수확기 등 주요 생육시기에 채종포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2. 지원장은 채종포장 점검결과 생육이 불량하거나 검사규격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종자 생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필지에 대해 개선조치를 지시하고, 개선이 곤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지원장은 작물별로 당해 연도 채종단지에 대한 종합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원장은 별표 4의 채종단지 종합평가 지표를 참조하여 채종농가 호응도, 단지여건, 포장검사 및 수매검사 실적 등 종합평가 항목의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채종단지별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채종포장 및 농가선정 등 보급중 생산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은 채종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채종단지별로 전담지도사 지정을 요청하고, 전담지도사로 하여금 파종(이앙)에서 수확 시까지 건전한 종자 생산을 지도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지원장은 채종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채종단지별 대표자를 생산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채종단지 대표자는 종자생산대행 신청 시 채종단지 회원 연명으로 추천하도록 한다.

2. 생산관리지도원은 작물별로 1개단지에 1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2작물에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3. 생산관리지도원은 다음의 요령에 따라 배치·활동한다.

가. 배치 시기는 종자생산대행 계약일부터 수매 완료시까지 배치한다. 다만, 월동작물인 맥류는 생산·지도 수요가 적은 동절기(12월~1월) 2개월은 제외한다.

나. 활동기준 일수는 월단위 주당 평균 3일로 하되, 기상동향 등 단지 여건에 따라 주 단위 활동 일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다. 생산관리지도원에게 생산관리 업무수행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며, 활동비는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국립종자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라. 생산관리지도원은 매월 별지 제8호서식의 "생산관리지도부"를 작성하여 익월 초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지원장은 작물의 경종시기별로 생산관리지도원의 주요 임무 및 월별 활동 일수 등을 포함한 월별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 임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지원장은 채종농가의 고품질 종자생산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와 대농민 품종전시 등을 위해 작물별 파종(이앙) 후 지원 여건에 따라 단지별 대표찰 및 필지별 소표찰을 제작·설치할 수 있다.

1. 단지별 대표찰 표기내용은 단지명, 품종, 면적, 생산목표량, 농가수 등을 포함하고, 소표찰에는 농가명, 지번, 면적 등을 포함하여 제작하되 표찰 규격 및 표기내용 등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대표찰은 채종단지 중간지역 전면에 설치하고, 소표찰은 필지별로 도로와 가까운 지점에 설치한다.

가. 대표찰 규격: 가로120cm×세로80cm×높이150cm±10cm(지상고)

나. 소표찰 규격: 가로30cm×세로 15cm×높이150cm±10cm(지상고)

⑥ 지원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 및 채종포장 지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별표 5의 보급종 생육상황 조사 방법에 따라 주요 생육시기별 생육상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확 및 종자 보관 관리) ① 지원장은 종자 활력 유지 및 수확 시 기계적 손상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자의 수분함량, 등숙기간 및 날씨 등을 감안하여 적기에 수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이슬이 있거나 비온 후 등 습도가 높은 때에는 수확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작물별 수확 시 적정 수분함량은 벼·보리 17~23%, 밀 16~19%, 콩 14% 내외로 적기에 수확하여야 한다.

2. 콤바인의 회전속도는 종자가 기계적인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종별로 표준작업속도를 준수하되, 일반 탈곡보다 저속으로 탈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수확할 때에는 단지별 전용 수확기계(콤바인 또는 탈곡기, 건조기 등)를 지정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생산관리지도원 책임하에 탈곡속도, 수확기계 청소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피해립 최소화 및 이품종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수확한 종자는 품위저하 방지를 위해 즉시 건조하여야 하며,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할 경우에는 안전건조 온도(순환식건조기: 40℃ 이하)를 유지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적은 물량 건조 시 열풍 온도는 낮게 하고, 종실의 외층부분과 안쪽부분간 수분함량 평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Tempering) 시간을 충분히 두어 급전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건조 후 종자를 포대에 담을 때에는 포대 속의 열기와 수분이 원활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포대 입구를 열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확한 종자를 수매하기 전까지 채종농가에서 보관하는 동안 종자의 발아력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하고, 종자의 발아력 유지 및 이품종 혼입 등 각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서 다른 품종과 별도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보고 및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 입력사항) ① 주요 보고 및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사항, 시기, 방법 등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서식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을 준하여 작성하되, 지원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장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정부 보급종 수매요령

제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매"란 채종농가가 생산·건조하여 소형 및 대형 포장재에 담아둔 종자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수매검사"란 수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농가별로 채취한 시료를 분기준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전시료"란 수매검사를 위하여 시료채취원이 농가별로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4. "포장수매"란 수매검사의 모든 검사규격을 충족하고, 포대별 단량을 정하여 수매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건조가 필요하지 않은 수매방법을 말한다.
5. "산물수매"란 수매검사에서 수분을 제외한 검사규격을 충족하고, 별도의 포대별 단량을 정하지 않고 수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9조(수매계획 수립 및 수매기간) ① 지원장은 당해 연도 작물별 보급종 공급계획량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작물별 보급종 생산계획량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단지별 수매계획량
2. 수매 기간 및 방법
3. 수매업무 담당자 및 시료채취원 지정

② 작물별 보급종 생산계획량을 초과하여 수매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 수매계획 수립 전에 품종별 선호도를 조사하여 품종별 수매계획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벼 보급종의 탄력공급계획량은 품종별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수급상황을 감안하여 품종별 수매량을 결정한다.
2. 농업인 및 소비자의 수요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되어 수매량을 축소하는 품종은 채종농가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작물별 수매기간은 아래 기간 중에 수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장이 기상·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매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작물	수매기간
벼	9.11. ~ 12.20.
맥류(보리·밀·호밀 등)	5.21. ~ 7.30.
두류(콩·팥 등)	11.1. ~ 12.20.

제10조(수매가격 결정기준) ① 벼·콩 등 하계작물 수매가격은 「하계 주요작물 종자 생산·공급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② 보리·밀 등 동계작물 수매가격은 「동계 작물종자 생산·공급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제11조(종자수매) ① 수매대상 종자는 「종자산업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로서 수매검사는 별표 2의 정부 보급종 수매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포장검사에 합격된 필지라도 수확 전 도복 또는 병해충 등이 발생하여 포장검사 규격을 초과한 경우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농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포장검사에서 불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생산물, 수매검사에서 불합격한 생산물, 수매계획량을 초과한 잉여 생산물 등은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물량은 채종농가가 자체 처분한다.

3. 포장검사에 합격 후 종자검사에 불합격하여 수매하지 못한 농가에는 종자 생산 노력과 인건비 등 추가 투입비 보전 등을 위해 국립종자원장이 정한 포장관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종자검사에 일부 불합격되었으나 수매계획량을 수매한 경우는 포장관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수매용 포장재는 종자의 품종순도 유지 등을 위해 지원장이 공급 또는 지정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재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명
2. 단지명
3. 농가명
4. 기타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수매방법은 포장수매와 산물수매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포장수매"는 포대별 단량을 40kg 단위로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장이 포대별 단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산물수매"는 포대별 단량에 대한 별도 구분이 없으며, 수매 시 1kg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지원장은 생산관리지도원에게 수매검사 합격한 농가별 출하물량을 통보해 수매일정에 따라 수매장소에 출하하도록 조치하고, 종자수매 포대마다 농가명, 품종명, 단지명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매장소는 지원의 정선센터 앞으로 한다. 다만, 수매종자를 외부 창고에 보관할 사유가 있거나 채종단지와 지원간 원거리(20km 이상)일 경우 지원장이 수매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지원장은 수매검사에 합격하여 수매를 완료한 종자에 한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종자매입확인증"을 채종농가와 수매자금을 배정한 농협장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매대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지원장은 농협장에게 채종농가를 확인한 후 종자매입확인증에 표기된 수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계좌입금 처리 등 수매대금 지급 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수매대금 지급은 발아, 순도, 수분 등 수매검사 합격품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매가격 결정 전에 수매할 경우에는 수매검사 합격품에 한하여 수매대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차액은 수매가격 결정 후 지급할 수 있다.

3. 지원장은 수매대금 지급시기에 계약농가의 변경으로 지급대상 및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지원장은 변경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수매종자 보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수매종자 보관은 해당지원 정선저장고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선저장고 이외의 장소에서 수매한 경우에는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창고에 품종별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당일 수매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품종별, 농가별로 구분하여 적재·보관하여야 한다.
2. 지원장은 지원 외 수매종자 보관기관으로부터 입고당일 별지 제10호 서식의 "종자보관확인증"을 단지별로 3부를 작성하게 하여 지원장과 해당 단지대표에게 각각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종자수매 실적은 수매와 동시에 농가별로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매실적이 품종별로 당초 목표량과 차이가 있거나 수매물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⑨ 수매 종자의 수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수송 대상은 수매검사에서 합격하고 중량검사까지 완료된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중량(수분)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매한 종자는 수송비 및 보관료 절감과 혼종방지 등 종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3. 수송량은 수매계획량에 맞게 수송하여야 한다.
4. 수매장소가 정선저장고로부터 원거리(20km 이상)에 위치한 수매종자는 정선저장고까지 수송조작할 수 있다. 다만, 20km이내의 경우라도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송조작할 수 있다.
5. 지원장은 수매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혼종방지 등 종자의 안전관리 및 비용(보관료)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매검사 합격품에 한하여 정선저장고로 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량 합격 가능한 종자를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량은 수매계획량에 맞게 수송하여야 한다.
6. 수매종자의 수송 하역조건은 국립종자원과 농협경제지주간에 체결한 「종자 구·판매업무 대행 및 보관수송조작 도급계약서」의 종자 인·수도 계약 규정을 따른다.

⑩ 지원장은 종자수매 완료 후 농협경제지주에서 청구하는 수송조작비, 수매대행수수료, 하역비 등이 정확히 청구되었는지 확인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종자수송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⑪ 수매종자를 지원의 정선저장고 이외의 창고에 보관 후 종자원 정선 저장고로 수송할 경우 보관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종자보관확인증"에 의하여 지급한다.

⑫ 지원장은 수매업무 담당자 및 수송·보관기관 등으로 하여금 모든 과정에서 수매용 포대가 훼손되거나 종자가 혼종되지 않도록 취급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⑬ 지원장은 행정기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급종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채종단지를 대상으로 수확, 건조 등 종자 취급방법을 지도하고, 종자수매에 관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종자수매 관계공무원은 친절과 봉사로써 종자출하 농가의 수매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원장이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000호, 2026. 00. 0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요 업무별 보고 및 관리 방법(제7조제1항 관련)

주요항목	작 물 별 처 리 기 한			서식	보고 관리방법
	벼	맥류	두류		
○ 종자생산대행계약상황	3.30.	9.30.	5.10.	별지 제1호	시스템입력
○ 종자(원종)인수 및 배부상황	6.20.	10.20.	6.20.	별지 제2호	"
○ 원종정선소독일지				별지 제3호	"
○ 보급종 생산용 원종배부결과				별지 제4호	"
○ 채종농가 교육 상황	4.20.	10.20.	6.20.	별지 제5호	자체보관
○ 파종(이앙) 실적	6.30.	11.10.	7.10.	별지 제6호	시스템입력
○ 각종 재해발생 및 조치상황	수시	수시	수시	별지 제7호	별도조치
○ 생산관리지도원 지도부				별지 제8호	자체보관
○ 시료채취대장				별지 제15호	자체보관 시스템입력
○ 종자매입확인증				별지 제9호	시스템입력
○ 종자보관확인증				별지 제10호	"
○ 종자수매일계표				별지 제11호	"
○ 종자수매실적	12.24.	8.5.	12.24.	별지 제12호	"
○ 종자수송조작지시내역				별지 제13호	자체보관 시스템입력
○ 종자수송 결과	완료즉시	완료즉시	완료즉시	별지 제14호	시스템입력

※ 시스템입력 :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함

※ 가루쌀 등 별도 기한이 있는 품종은 해당 품종 완료 즉시

[별표 2]

정부 보급종 수매 검사기준 및 방법(제11조제1항 관련)

1. 수매검사 대상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한 종자로 한다.

2. 수매검사 신청

가. 작물별 생산담당자(경기도종자관리소장)는 단지별 수매개시 20일 전까지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해당지원 검사팀에 수매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검사팀은 수매개시일 전까지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검사팀은 종자휴면에 따른 발아지연 및 재검사 등으로 수매개시일 전까지 수매검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수매개시 5일전까지 그 사유를 생산팀(경기도종자관리소장)에 중간 통보하고 검사일정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3. 수매검사 규격

가. 지원장은 다음 각 작물별 수매검사 규격에 따라 종자를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연재해 등으로 종자검사 규격을 다르게 정한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벼

최저한도(%)		최고한도(%)									
정립	발아율	수분	이품종	이중종자	잡초종자	피해립	병해립		이물	미숙립률	메벼출현율
							특정병	기타병			
98.0	85	14.0	0.10	0.05	0.30	3.0	5.0	10.0	2.0	4.0	0.6

* 다만, 산물수매 시 수분 규격은 16.5%로 한다.

* 피해립은 박피립 등 정선과정에서 선별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 발아율 검사 시 미숙립 등 정선과정에서 선별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 수발아 발생 우려 등으로 지원장이 조기수확을 지시한 품종은 미숙립률에 한하여 규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매할 수 있으며, 초과된 비율만큼 수매량에서 제외한다.

예) 미숙립률 6%(2% 초과)짜리 100kg은 98kg 수매로 등록

2) 보리(겉보리, 쌀보리)

최저한도(%)		최고한도(%)								
정립	발아율	수분	이품종	이종종자	잡초종자	피해립	병해립		이물	매성배유개체출현율
							특정병	기타병		
98.0	85.0	14.0	0.20	0.20	0.40	5.0	4.0	10.0	2.0	0.6

* 정선시설 및 기술의 발달로 제거가 가능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잡초로 보아 이탈리아라이그라스 · 헤어리비치 및 목초종자는 잡초종자로 분류한다.

3) 밀

최저한도(%)		최고한도(%)								
정립	발아율	수분	이품종	이종종자	잡초종자	피해립	병해립		이물	
							특정병	기타병		
98.0	85.0	12.0	0.20	0.10	0.40	5.0	0.2	10.0	2.0	

* 다만, 산물수매시 수분 규격은 13.0%로 한다.

* 정선시설 및 기술의 발달로 제거가 가능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잡초로 보아 이탈리아라이그라스 · 헤어리비치 및 목초종자는 잡초종자로 분류한다.

4) 콩

최저한도(%)		최고한도(%)								
정립	발아율	수분	이품종	이종종자	잡초종자	피해립	병해립		이물	
							특정병	기타병		
98.0	85	14.0	0.50	0.10	0.20	5.0	5.0	10.0	2.0	

5) 사료용 품종(호밀, 트리티케일, 벼 · 보리 등)

구분	최저한도(%)		최고한도(%)				
	정립	발아율	수분	이종종자	잡초종자	이물	
벼	98.0	80	14.0	0.20	0.40	4.0	
보리, 호밀, 트리티케일	98.0	80	14.0	0.20	0.20	4.0	

* 보리의 이품종 최고한도(%)는 6.0%로 한다. 다만 이품종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중 어느 한 품목이 섞인 것을 말한다.

6) 팥

최저한도(%)		최고한도(%)								
정립	발아율	수분	이품종	이종종자	잡초종자	피해립	병해립		이물	
							특정병	기타병		
98.0	85	13.0	0.50	0.10	0.20	5.0	5.0	10.0	2.0	

나. 이 기준 및 방법에서 다루지 않은 작물에 대해서는 ‘종자관리요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2조 포장검사 등의 검사기준’을 준용한다.

4. 소집단(Lot)의 구성

수매검사를 위한 소집단은 작물별, 품종별, 농가별, 품위별로 구분하여 구성하되, 소집단의 최대 중량은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에서 정한 중량으로 한다.

5. 소집단의 밀봉

- 가. 소집단의 포장(용기)은 봉인할 수 있거나 자동 봉인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봉인은 포장할 경우 자동적으로 봉인이 되는 것 또는 종자검사원이 인정하는 봉인이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료채취원의 통제에 따라 공인된 봉인 도장을 찍거나, 지울 수 없는 표시를 하거나, 개봉하면 파손 또는 흔적이 남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6. 수매종자의 중량검사

- 가. 수매종자의 무게는 농가별 수매대상이 되는 종자의 총량을 측정하되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으로 한다. 다만, 포장수매의 경우 임의추출 방법으로 검사하고, 소집단별 조사수량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포장수매 시 중량검사 기준

소집단 크기	1~10대	11~100대	101~300대	301~500대	501대 이상
조사수량 또는 비율	50% 이상	10대 이상	15대 이상	25대 이상	5% 이상

- 나. 산물수매 수분 규격으로 수매한 종자(벼 16.5%, 밀 13.0%)의 수매량은 건조 후 종자 중량의 산출 공식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1) 건조 후 종자 중량 산출 공식

$$\text{건조 후 종자 중량} = \text{산물종자 중량} \times \text{중량지수}^*$$

$$^* \text{ 중량지수} = \frac{100 - \text{종자의 당초 수분}(\%)}{100 - \text{건조 후의 수분}(\%)}$$

7. 시료채취

- 가. 시료는 채종농가 또는 생산관리지도원 입회하에 시료채취원이 채취한다.
- 나. 소집단별 1차 시료채취는 "1) 시료채취기준"에 따르며, 사전시료의 양은 "2)제출시료의 최소 중량" 이상이어야 한다.

1) 시료채취 기준

소집단 크기	1~15대	16~30대	31~60대	61~100대	101대 이상	비 고
1차 시료 개수	매 포장 1개소 이상	15개소 이상	20개소 이상	30개소 이상	40개소 이상	사전시료 1점

2) 제출시료의 최소중량

구 분	벼	콩	팥	보리	밀	사료용 품종
중량(g)	7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 시료채취원은 다음의 경우 시료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

- 1) 시료 채취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소집단의 품위가 확연히 불균일할 경우. 다만, 채종농가가 희망하여 품위별로 소집단을 다시 편성한 경우 시료채취할 수 있음
- 3) 소집단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가 불량하여 균일한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지원장이 지정한 포장재에 담겨있지 않은 경우
- 5) 시료의 수분이 검사규격을 초과하였을 경우

라. 시료채취원은 농가명, 물량, 수분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시료채취대장"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채취내역을 종자관리통합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마. 시료채취원이 농가별로 채취한 사전시료는 지체없이 종자검정실에 송부(제출)하여야 한다.

8. 수매검사 방법

- 가. 접수된 시료는 순도분석, 발아율 검정 등의 검사를 신속하게 완료 하여야 한다.
- 나. 발아시험은 마감일 전이라도 수매검사규격 이상 발아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채종농가에 사전 통보할 수 있다.
- 다. 발아시험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아시험을 즉시 종료하고 결과를 수매검사 신청자 또는 채종농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시험 중인 종자가 최대로 발아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비정상묘 및 죽은 종자가 많아 나머지 종자가 모두 정상묘로 자란다고 하여도 합격범위에 들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수매검사에 합격한 종자는 수분함량을 확인하거나 품위의 변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수매 당일 수매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마. 수매검사 결과 불합격한 종자에 대해 해당 농가가 재검사를 희망하고, 재정선 또는 건조 등 소집단 구성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시 시료채취하여 수매검사를 할 수 있다.

9. 수분함량의 측정

- 가. 수분측정은 저온항온 건조기법 또는 고온항온 건조기법으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보조 수분측정법을 사용할 수 있다.
 - 1) 농가별로 채취한 사전시료의 수분함량을 확인하여야 할 경우
 - 2) 수매일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수분함량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시료관리

- 가. 수매검사를 위한 사전시료와 수매 당일 검사한 시료는 종자 민원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 품위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료 접수일부터 1년간 저온보관하여야 한다.

11. 기타

- 가. 수매검사 방법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종자 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을 준용한다.

[별표 3]

정부 보급종 신규 채종단지 선정 기준지표(제2조제1항 관련)

항목(배점)		배점	평 점 기 준
공통 지표 (70)	1. 포장조건	30 (벼 35)	<p>○ 포장조건(30점)(벼는 35점)</p> <p>· 포장집단화 정도(15점) = 단지구성면적 중 집단화 정도</p> <p>* 배점 : (3점) 불량, (6점) 미흡, (9점) 보통, (12점) 양호, (15점) 매우양호</p> <p>※ 채종단지 필 지 중 채종포와 인접하지 않은 필지면적 비율 적용 (벼 해당, 기타 작물은 지역여건 고려하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일괄 9점 배점)</p> <p>· 재배안정성(15점) = 단지구성 면적 중 상습피해 대상면적 정도</p> <p>* 배점 : (3점) 불량, (6점) 미흡, (9점) 보통, (12점) 양호, (15점) 매우양호</p> <p>※ 상습피해대상 : 과거 피해지역, 태풍피해 및 폭우 시 피해우려지역 등</p> <p>· 관·배수(벼)(5점) = (관·배수 가능면적/단지구성 면적)×100</p> <p>* 배점 : (1점) 불량, (2점) 미흡, (3점) 보통, (4점) 양호, (5점) 매우양호</p>
	2. 지자체 및 농협 지원	10	<p>○ 지자체 및 농협 협조(10점) = 보급종 채종사업 협조정도</p> <p>* 배점 : (2점) 매우 불량, (4점) 다소 미흡, (6점) 보통, (8점) 양호, (10점) 매우양호</p> <p>※ 평가기준 : 과거 지원현황 및 향후 구체적인 지원 가능성을 고려</p>
	3.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	10	<p>○ 농작물재해보험 가입(10점) = (전년도 가입면적/단지구성 면적)×100</p> <p>* 배점 : 10점 × 단지별 가입률, ex) 10점 × 가입률 83% = 8.3점</p>
	4. 단지여건	20	<p>○ 단지여건(20점)</p> <p>· 채종농가 구성(6점) = 농가수 및 연령, 채종관련 경력 등</p> <p>* 배점 : (2점) 미흡, (4) 보통, (6) 양호</p> <p>· 농기계 보유현황(7점) = 파종, 재배, 수확기계 등 보유정도</p> <p>* 배점 : (1점) 미흡, (3) 보통, (5) 양호, (7) 매우양호</p> <p>· 종자수매여건(7점) = 수매장소, 보관창고 등 보유 정도</p> <p>* 배점 : (1점) 미흡, (3) 보통, (5) 양호, (7) 매우양호</p> <p>※ 평가기준 : 농기계 보유 및 수매여건은 단지규모 고려 상대평가</p>
지원 지표 (30)	지원에서 설정	30 (벼 25)	○ 지원 실정에 맞게 지표 설정
가점 (5)	청년농업인	5	○ 실제 경작을 하는 채종농가에 청년농업인 포함 시

※ 신규단지 선정 시 평가결과 최저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배점은 평가항목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4]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 종합평가 기준지표(제5조제2항 관련)

항목(배점)		배점	평 점 기 준
공통 지표 (70)	1. 단지여건	15	<p>○ 단지여건(15점)</p> <p>· 집단화 정도(5점) = 단지 총면적 중 집단화 정도</p> <p>* 배점 : (1점) 불량, (2점) 미흡, (3점) 보통, (4점) 양호, (5점) 매우양호</p> <p>※ 판정기준 : ‘신규채종단지 선정 기준 지표’ 와 동일, 벼 이외 작물은 적용이 어려울 경우 일괄 3점 배점</p> <p>· 병충해 피해정도(5점) = 단지 총 면적 중 피해면적 정도</p> <p>* 배점 : 5점 × (100-피해율), ex) 5점 × (100-피해율 30%) = 3.5점</p> <p>※ 판정기준 : 종자의 품위가 현격히 저하될 정도의 수준, 재해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단지는 3점 일괄 배점</p> <p>· 적정시비·도복(5점) = 단지 총 면적 중 과비·도복피해 면적 정도</p> <p>* 배점 : 5점 × (100-피해율), ex) 5점 × (100-피해율 30%) = 3.5점</p> <p>※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및 재해지역 선정 단지는 3점 일괄 배점</p>
	2. 채종농가 호응도	15	<p>○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5점) = (가입면적/단지구성 면적)×100</p> <p>* 배점 : 5점 × 단지별 가입률, ex) 5점 × 가입률 80% = 4.0점</p> <p>※ 가입실적은 채종필지 재해보험 가입서류 확인 (재해보험 가입이 안되는 작물은 동일점수 5점 부여)</p> <p>○ 영농일지 작성(5점) = (작성실적/총 작성건수)×100</p> <p>* 배점 : 5점 × 작성률, ex) 5점 × 작성률 90% = 4.5점</p> <p>※ 총작성 건수: 영농일지 필수 작성항목(농가교육, 파종, 이앙, 시비, 방제, 수확)</p> <p>○ 단지 공동체 활동 노력(5점) = 건당 1점 최대 5점</p> <p>* 공동체 활동 내역 : 자체 포장관리 교육 및 선진지 견학, 공동 육묘/파종, 병해충 공동방제(종자소독 및 본답방제), 자체포장검사 준비(잡초 및 이형주 제거 등), 수매품 공동 보관(창고)</p>
	3. 포장검사	20	<p>○ 포장검사 합격률(20점) = (합격면적/단지 총면적)×100</p> <p>* 배점 : 20점 × 합격률, ex) 20점 × 합격률 95% = 19.0점</p>
	4. 수매검사	20	<p>○ 수매검사 합격률(20점) = (합격량/단지 총검사항량)×100</p> <p>* 배점 : 20점 × 합격률, ex) 20점 × 합격률 93% = 18.6점</p> <p>※ 합격률은 종자관리통합시스템의 「수매검사 결과보고」로 함</p>
지원 지표 (30)	지원에서 설정	30	<p>○ 지원 실정에 맞게 지표 설정</p> <p>* 파종(이앙)실적, 포장관리, 수확 및 수매전 관리, 수매품 품위, 가감점 등</p>
가점 (5)	청년농업인	5	<p>○ 실제 경작을 하는 채종농가에 청년농업인 포함 시</p>

* 모든 배점은 평가항목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5]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 생육상황 조사 방법(제5조제6항 관련)

☐ 조사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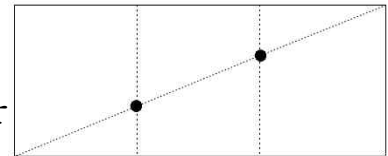
작물	1차	2차
벼	출수기(8.16.기준)	성숙기(9.16.기준)
두류	개화기(8.16.기준)	성숙기(9.16.기준)
맥류	생육재생기(3.1.기준)	출수기(4.30.기준)

* 조사 시기는 작물의 생육상태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조사방법

○조사대상 및 조사지점

- 채종단지별 생산포장의 생육정도가 중간 정도로 해당 단지의 생산포장을 대표할 수 있는 기준 필지 1개소 이상 선정
- 조사 필지를 길이 방향으로 3등분한 선과 대각선을
그어 교차되는 2개 지점을 조사하여 평균함



※ 조사지점 예시 : ●

☐ 조사항목

작물	1차	2차
벼	초장, 포기수, 분얼수, 출수기, 병해충	간장, 포기수, 이삭 수, 이삭당 립수, 병해충, 생육상태 등
두류	경장, 개체수, 가지수, 개화기, 병해충	개체수, 꼬투리수, 꼬투리당 알수, 병해충, 생육상태 등
맥류	초장, 줄기수, 생육재생기, 병해충, 생육상태 등	출수기, 간장, 이삭 수, 이삭당 립수, 병해충, 생육상태 등

[참고] 생육상황 조사 기준 및 방법

○ 벼

조사항목	조 사 기 준	방법	규 모	단위
초 장	- 지면에서 최장엽의 선단까지 길이	측정	20주	cm
포 기 수	- m ² 당 포기수	측정	m ²	주
분 열 수	- 1포기당 총 가지 수(2엽 이상 전개한 것)	측정	20주	개
출 수 기	- 조사 필지의 40%가 출수한 날	관찰	전체	월일
간 장	- 지면에서 이삭목까지의 길이	측정	20주	cm
이 삭 수	- 1주 또는 단위면적당 이삭의 총수	측정	20주	개
이삭당 립수	- 1이삭당 벼알수	측정	10이삭	립

○ 두류

조사항목	조 사 기 준	방법	규 모	단위
경 장	- 지면에서 줄기 선단까지 길이	측정	10개체	cm
개 체 수	- m ² 당 개체수	측정	m ²	개체
가 지 수	- 분지 중 2개 이상의 절수를 가지는 가지	측정	10개체	개
개 화 기	- 조사 필지의 40%가 개화한 날	관찰	전체	월일
꼬 투 리 수	- 1개체 당 꼬투리 총수	측정	10개체	개
알 수	- 꼬투리당 립수	측정	20꼬투리	립

○ 맥류

조사항목	조 사 기 준	방법	규 모	단위
초 장	- 지면에서 고엽을 제외한 최장엽의 선단까지 길이	측정	20주	cm
경(줄기) 수	- 주경으로부터 잎의 크기가 1cm이상 신장된 것	관찰	30cm간 조사 m ² 당으로 환산	개
생 육 재 생 기	- 지상부 : 경엽을 절단한 후 신엽의 신장이 인정될 때 - 지하부 : 신근 발생이 육안으로 판정될 때	관찰	10주	월일
출 수 기	- 총 경수의 40% ~ 50%가 출수한 날	관찰	전체	월일
간 장	- 지면에서 이삭목까지의 길이	측정	20주	cm
이 삭 수	- 30cm간 조사구역 내의 이삭수를 m ² 당으로 환산	측정	30cm간 조사 m ² 당으로 환산	개
이삭당 립수	- 생육이 균일한 장소에서 무작위로 10수를 채취 탈곡 후 조사(전체립수/10)	측정	10이삭	립

<별지 제1호서식>

종자생산대행 계약상황

품종	단지명	단지소재지			면적	생산 목표	농가 수	필지 수	담당자		지원과의 거리
		군	면	리					지원	지도 원	
					ha	톤	호	필지			

<별지 제2호서식>

원종인수 및 배부상황

(단위 : kg)

품종	생산 기관	인수량	정선결과			원종배부(계획)					
			투입량	제품량	감모량	보급종 생산용	타지원 지원	전배 물량	격하 공급	기타	잔량

※ 원종배부는 관할 원종장에서 인수하여 정선한 제품에 대한 원종배부량임

<별지 제3호서식>

원종정선·소독일지

년 월 일

품종	생산 기관	투입량	정선·소독결과			정선·소독 실시여부
			제품량	감모량	감모율	
		kg			%	

※ 특기사항

<별지 제4호서식>

보급종 생산용 원종배부결과

단지명 :

배부일자 :

품종명 :

배 부 자 :

농가명	지정면적	종자배부량	산지별	인수자

<별지 제5호서식>

채종농가 교육상황

작물 (품종)	단지명	교 육		교육내용	교 육 실 적			강 사	
		일시	장소		계획	실적	비율	기관명	성 명
					명	명	%		

<별지 제6호서식>

파종(이앙) 실적

품종	단지명	파 종(이 앙)실 적			농가수	필지수	파종기간
		계 획	실 적	비 율			
		ha	ha	%	호	필지	월. 일~월. 일

<별지 제7호서식>

각종 재해발생 및 조치상황

품종	단지명	발 생				조 치			비 고 (재해발생 원인)
		월 일	재해명	면 적	발 생 정 도	월 일	면 적	조 치 내 용	
				ha			ha		

<별지 제8호서식>

()월 생산관리지도부

근무기간		근무일수	
단 지 명		성 명	
지 도 상 황			
근무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상기와 같이 생산관리지도원 활동상황을 제출합니다.

()단지 생산관리지도원 : (인)

국립종자원 ()지원장 귀하

주) 채종단지 생산관리지도원은 근무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을 작성하여
국립종자원 담당자에게 제출(우편, 팩스, 직접 제출 등)

* 지원 지역여건에 따라 활동내용 및 기재방법(도장, 서명 등) 등은 조정할 수 있음.

[illegible]

- 27 -

<별지 제10호서식>

종 자 보 관 확 인 증					
산지	도 시군 읍면 리동				
수매장소					
품종	단 량	수 량	입고월일	보 관 창 고	비 고
	kg				
위와 같이 입고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보관기관 (인)					
귀 하					

<별지 제11호서식>

종 자 수 매 일 계 표

No. _____

수매년월일 : 년 월 일

수매장소 :

[illegible]

위와 같이 종자를 수매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illegible]

검사기관 : 성명 (서명)

보관기관 : 성명 (서명)

<별지 제12호서식>

종 자 수 매 실 적(최종분)

○ 총괄

(단위 : kg, %)

품종	단지	생산목표 (A)	수매계획 (B)	수매실적 (C)	증 감 량		비 율	
					C-A	C-B	C/A	C/B
계								

- 품종별 수매미달 사유 및 향후대책

○ 수매대금 지급상황

품종	단지	수매실적 (kg)	종 자 수 매 대 금(원)		
			계	종자대금	생산보상금
계					

○ 수매방법별

품 종	수 매 실 적(kg)			산물수매비율	수매기간 (월, 일)
	계	산물	포장		
계					

<별지 제13호서식>

종자수송조작 지시내역							
발지	착지	품 종	단량	포대 종류	수 량		수송기간
					개수	중량	
			kg				
위와 같이 종자를 수송 조작 지시함 년 월 일 국립종자원 ○ ○ 지원장 (인)							
농협경제지주 ○ ○ 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 종자수송 결과

1. 종자수송내역

(단위:kg)

작물	수송량	수송내역				비고
		소계	수송비 지급 물량		기타	
			농협	택배		

2. 종자수송 세부내역

가. 수송내역

(단위:kg)

발지	착지	수송거리	수송량	수송기한	실수송일	지체 일수	비고
합 계							

나. 작업내역

(단위:kg, 원/톤)

발지	착지	작업방법	작업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15호서식>

() 시료채취 대장

(단위:kg,개,%)

단지명	농가명	검사물량			시료 점수	수분	봉인 방법	보관상태	특이사항	입회자	시 료 채취원	채취일
		단량	수량	중량								